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58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	배포	2017.5.5(금) 14:00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정태호 사무관 (02-2100-2833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김 동 성(02-3145-8300)		김병철 팀장(02-3145-8001)

제 목 :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◆ **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**
 - ① **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**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 (=지정대리인)에 대해서는 **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**

- ◆ **인사, 총무, 법무, 회계 등 후선업무 업무위탁 절차 간소화**
 - ① 후선업무 중 **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,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집행업무**는 위수탁보고 없이 **자유로운 위탁 허용**
 - ② 단순집행 업무 외에 **후선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업무도 보고절차**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**위탁 허용**

- ◆ **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**
 - ① **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** (→ 예금잔액증명서 발급, 보험계약 부활처리, 재보험 정산업무* 등 위탁 허용)
 - * 보험사와 재보험사 상호간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및 보험금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
 - ② 위탁받은 업무의 **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**

- ◆ **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에 대한 위탁기준 강화**
 - ①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**내부통제관련 핵심기능(준법 감시, 내부감사, 위험관리, 신용위험 평가)은 위탁기준 강화**

-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업무위탁규정 제정('00년)
 - '05.7월 개정時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(17종)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, 업무위수탁 보고의무 신설
 - '09.2월 자본시장법 시행, '10.1월 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 투자업자 및 지주체계 내의 업무위탁 규율은 개별법으로 분리
 - 그러나,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과거('05.7월) 마련한 규제체계가 장기간 개정·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
 - ①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('17.3월)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
 -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(=지정대리인 지정)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
 - ②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과도하게 저해
 - 증명발급, 계약해지·부활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 집행업무는 위탁을 허용해 업무효율 및 소비자 편의 개선 필요
 - ※ 지주회사법은 지주계열사 간에 증명발급 등 단순집행업무, 전산시스템을 통한 반복처리업무 등의 위탁을 폭넓게 허용
 - ③ 인사,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에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소형사나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담 가중
 - 후선업무의 위탁절차를 단순화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살리고 본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
 - ※ 자본시장법은 인사, 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 별도의 보고의무를 면제
- ⇒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규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,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등 마련 추진

2

개정안 주요 내용

(1)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(제3조의3)

-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(‘17.3월, 4차산업 금융분야 TF)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사항 규정
 -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(=지정대리인)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
 - 다만,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
 - 금융위원회*는 지정대리인 지정시 ①영업 지역,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 편익, ④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
- * 금융위·금감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에 관한 위임

▶ 기대효과

- ◇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됨
- ※ (예)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

(2)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 확대 (제2조)

- (기존)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·용역계약만 규정적용 배제
 - 인사, 총무, 법무,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*
 - * 인사정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는 행정지도로 위탁 불허
- (개정) 후선업무 中 ①금융업 영위나 ②인허가받은 인적,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 허용
 -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 허용
- ※ (참고1)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

▶ 기대효과

◇ 금융회사가 인사, 총무 등 후선업무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외부 사무관리회사 등에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됨

※ (예)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, 총무, 경리, 회계, IT 등 업무를 보고없이 위탁

(3)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(제3조)

□ (기존)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

○ 본질적 요소의 내용*이 '05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간의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업법 체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

*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(예금, 대출, 환거래,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, 금전의 신탁, 유가증권의 매매·인수 등)으로 규정

□ (개정)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,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

①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(→자본시장법 체계 준용)하고,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*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

* (예) 예금잔액증명서 발급, 보험계약 실효처리, 재보험 정산업무 등

※ (참고2)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

②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(준법감시, 내부감사, 위험관리, 신용위험)은 위탁기준 강화

-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,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

③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,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(→정보처리위탁규정과 동일)

- 단,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

▶ 기대효과

◇ 예금잔액증명서 발급,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

※ (예)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

(4)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(제4조)

□ (기존) 사후보고 가능 사유가 제한적*이며, 사전보고의 경우 '계약체결 전 7영업일 전까지' 보고를 완료해야 함

- * ①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미 보고했던 업무위탁과 내용이 동일
- ② 업무위탁 내용이 포함된 약관 등을 미리 승인받은 후 사후적으로 업무위탁계약 체결
- ③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경미

○ 업무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고기준 준수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소요돼 업무위탁 활성화가 저해되는 측면

□ (개정) 사후보고 사유 확대 및 사전보고 기한 연장

- ①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동일한 위탁자-수탁자 간의 장기·반복적인 업무위탁도 사후보고 사유로 인정
- ② 사전보고 기한을 자본시장법(영 §46)과 동일하게 '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'로 연장

▶ 기대효과

◇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

※ (예) 외국계 지점과 본점 간에 시장조사, 영업지원 등 일상적 업무협조를 진행할 때 건별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만으로 위탁계약 체결 가능

(5)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 강화 (제5조)

□ (기존)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내용이 업무위탁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권고 가능

○ 변경권고를 미이행하더라도 직권취소 등 별도의 행정강제수단이 없어 통제수단으로의 실효성에 한계

□ (개정) 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등 일상적인 감독·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위법·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함

▶ 기대효과

◇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통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,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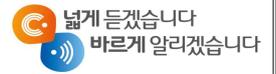
- 업무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(17.5.8~6.17)
- 규개위 규제심사 (17.6~7월)를 거쳐 금융위 의결(17.7월)을 통해 규정변경 완료

- [첨부] 1.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**
2.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

참고 1

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

※ 동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 업무위탁 허용 범위 판단

1] 인사관리

세부 업무(예시)	업무위탁 허용 여부	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정된 채용정책에 따른 직원 채용절차(공고, 이력서분류, 서류접수, 시험관리, 인성검사, 평판조회 등)의 대행 • 확정된 보수정책에 따른 급여·퇴직금 계산 및 지급 • 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, 교육 강의 • 확정된 인사정책에 따른 계약직 및 노무 관리 • 인사관련 파일 또는 DB의 축적·관리·분석 등 	자유롭게 허용	확정된 인사정책에 따른 단순집행업무에 해당하므로, 금융업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용·승·진·이·동·관·련·기·준·설·정·및·대·상·자·선·정·등 • 급여·성과급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결정 	제한적 허용 (보고 필요)	인사 및 보수정책 결정과 관련되는 업무인 바, 인허가받은 인적요소 유지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위탁 보고 필요

2] 경영지원 · 총무

세부 업무(예시)	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	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서, 우편물, 물품 등 수발 및 관리 • 사무용품, 집기, 비품, 인쇄물 등 구입 및 관리 • 사무기기 및 고정자산 유지·보수 • 건물 임대차 관리 • 인쇄물 및 콘텐츠 발주 • 각종 행사 주최 및 진행 • 보안 관제 서비스(경비업무 포함) • 우편물, 인쇄물 등 각종 서식·디자인 제작 • 안내자료 등 제작/인쇄/안내(전달) 대행 • 고객만족도 조사 	자유롭게 허용	경리, 총무 차원의 단순 집행업무에 해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콜센터 통화원 통화품질 평가 업무 • 고객정보 변경 확인 	제한적 허용 (보고 필요)	경우에 따라 금융업 관련성 존재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점업무, 계열 금융회사 업무를 본사후선부서에서 위탁받아 집중처리 	제한적 허용 (보고 필요)	집중처리하는 후선업무의 내용에 따라 금융업 관련성 존재 가능

③ 법률·회계·세무업무

세부 업무(예시)	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	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사 자체적인 법무·회계담당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하되,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 법률자문 또는 회계용역 등을 이용 	자유롭게 허용	금융회사가 직접 자신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위탁으로 볼 수 없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무처리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외부에 위탁 		세무업무는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위탁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무·회계와 관련한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외부에 위탁 	제한적 허용 (보고 필요)	법무, 회계업무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재무관리와 연관되므로 단순 후선업무라 보기 곤란

④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사항을 제외한 IT업무

세부 업무(예시)	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	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elp-desk • PC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• 유선전화 및 인터넷 회선 유지보수 등 •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	자유롭게 허용	전산설비 관리차원의 단순 집행업무에 해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선업무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• 전산시스템 운영 	제한적 허용 (보고 필요)	금융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전산설비 유지의무를 넘어 업무를 위탁하는지 보고 등을 통해 확인 필요

⑤ 기타

세부 업무	업무위탁규정 적용여부	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의 공급 업무 	자유롭게 허용	확정된 부가서비스 제공 방침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는 보험업 영위와 무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사/리서치 관련 전담부서를 두고, 집행업무 (미스터리 쇼핑, 설문조사)만을 외부위탁 		확정된 리서치 방침에 따라 단순 집행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으로 금융업 영위와 무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대여업 관련 대여장비 유지보수업무 	제한적 허용 (보고 필요)	시설대여대상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는 시설대여업과 관련성을 가짐

참고 2

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

※ 기존 업무위탁규정상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는 권역구분 없이 총 17종

- ①예금 ②대출 ③환거래 ④채무보증/어음인수 ⑤금전/재산 신탁
 ⑥유가증권 위탁매매 ⑦유가증권 인수 ⑧유가증권 자기매매 ⑨보험업 ⑩M&A 중개/주선
 ⑪CMA 개설, 어음의 발행/할인/매매/중개/인수/보증 ⑫선물거래업 ⑬신용카드업
 ⑭시설대여업 ⑮할부금융업 ⑯신기술사업 ⑰주택저당채권 유통화

업종	기존 17종 업무 중 해당업종에 속하는 본질적 업무	위탁이 허용되는 업무
은행업	① 예금 ② 대출 ③ 환거래 ④ 채무보증/어음인수 ⑪ 어음의 발행/할인/인수/보증	- "예금·부채잔액 증명서 발급행위"
보험업	② 대출 ④ 채무보증 (CDS인수, 자회사보증 한정) ⑨ 보험업 -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- 보험인수 심사/결정 - 보험계약 유지/관리 - 보험금지급 심사/결정 - 재보험 출수재	- 보험계약 체결업무 중 청약서 작성, 고지사항 수령 - 보험계약관리 중 실효처리, 심사 없는 단순 부활처리, 보험료 영수증 관리 - 재보험 정산 업무 중 입·송금을 제외한 업무 - 보험회사의 공시
여전	공통	② 대출 ④ 채무보증 - 부채잔액 증명서 발급행위
	카드	⑬ 신용카드업 -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-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- 신용카드 이용 대금결제 - 거래의 승인 - 기존과 동일
	캐피탈	⑮ 할부금융업 - 할부금융계약의 체결 - 할부금융심사 및 승인 - 기존과 동일
	리스	⑭ 시설대여업 - 리스심사 및 승인 - 리스계약 및 변경리스계약 체결 - 기존과 동일
	신기술	⑯ 신기술사업 - 투융자대상 물권에 대한 심사·승인 - 투융자 계약 체결 - 이익 환수(상장 및 지분매각) - 신기술조합 설립 및 자금의 관리, 운용 - 신기술조합 자금의 운용 업무
저축은행	① 예금 ② 대출 ③ 환거래	- "예금·부채잔액 증명서 발급행위"
상호금융	① 예금 ② 대출 ③ 환거래 中 내국환 추가 : 공제/재공제	- "예금·부채잔액 증명서 발급행위"